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45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 · 정준호 · 김영호 · 박희승 · 엄태영 · 장철민
최혁진 · 박성준 · 김문수 · 김동아 · 전용기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6. 3. 5.

3. 회 부 일 : 2026. 3. 6.

※ 의안번호 : 1724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나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연구기관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

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전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¹⁾가 관할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임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형태의 기관으로,²⁾ 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

1)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

가의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근거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이전까지 개별 법률에 따라 각 부처 산하에 분산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³⁾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감독 주체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면서 각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기능 조정 등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연구회를 설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후 2004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⁴⁾ 현재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⁵⁾가 다음과 같은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3) 법률 제5733호, 1999.1.29. 제정·시행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19개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2]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 관 명	
1. 한국개발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한국법제연구원
4. 통일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 한국환경연구원
8. 산업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2. 국토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개별적인 점을 고려하여, 각 분야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처와 연구기관을 함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처별 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성과를 연계하여 심의함으로써,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기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 취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고, 각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부 내 소관과 국회 내 소관이 불일치하게 되는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감독하는 정부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중복 통제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회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독립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참고로,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한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연구기관의 연구 분야도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⁶⁾ 개정안에 따른 경우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6)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